

방화관리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61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2

2011.12.30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에서의 방화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 예방과 화재로부터 각종 재해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의 전 교직원 및 교내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조직) 총장은 본교의 방화관리에 관한 총책임자가 되어 방화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, 필요에 따라 건물별, 실별 방화책임자를 두어이를 지휘, 통솔한다.
- **제4조(소방안전관리자 자격)**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 조 규정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 - ② 각 실별 방화책임자는 실별 시설물의 사용책임자로 한다.
- **제5조(소방안전관리자 책무)**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점검, 정비와 화기의 사용, 취급 등 방화안전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.
 -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,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월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④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**제6조(실별 방화책임자의 업무)** 실별 방화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.
 - 1. 사용 실내의 화재예방 및 화기단속 확인
 - 2. 사용 실내의 소방장비 등의 안전유지 관리
 - 3.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협조
- 제7조(방화관리 담당부서의 업무) 방화관리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- 1. 본교의 소방계획 작성
 - 2. 자체소방대의 조직
 - 3.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, 통보, 피난 등의 각종 교육 및 훈련
 - 4. 소방시설의 점검, 정비
 - 5. 화기 취급의 감독



방화관리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61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2

6.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

- **제8조(교육 및 훈련)** ① 본교의 교직원은 우리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소방교육 및 훈련에 적극 참가 하여야 한다.
 - ② 정기교육은 연 2회로 하고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육할 수 있다.
 - ③ 화재예방 교육 및 훈련에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부로부터 초빙하여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소방안전관리자는 방화관리 총책임자의 허락을 받아 자위소방대를 동원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9조(자위소방대 편성) 화재 및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조직하고 본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편성, 운영한다.
- 제10조(소방훈련 검토) 소방안전관리자는 각종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후 그 내용 면에 서 시정을 요하는 특이 사항 발견 즉시 이를 보완, 개선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자체점검) 소방안전관리자는 본교의 소방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수시로 자체점검 한다.
- 제12조(기타) ① 위험물 취급 장소 및 화기 취급소 등은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.
 - ②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물의 관계설계도면 등을 관리,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주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 관련 관계 법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